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 안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요양급여 적용기준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 음 -

□ 주요 변경사항 ('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

①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

○ 수가 산정기간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 권고 기간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② 코로나19 통합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 요양급여 대상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대상 기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대상 병상	일반격리병상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 지정격리병상 외의 병상)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u>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의 경우</u> <u>음압·일반격리실, (중증)응급환자 진료구역, 코호트 격리구역 등 병상 포함</u>	일반격리병상 (코로나19 중앙사고 수습본부 지정격리병상 외의 병상)

○ 수가

코 드	분 류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AH172	- 상급종합병원	270,000원	135,000원
AH174	- 종합병원	160,000원	80,000원
AH176	- 병원	100,000원	50,000원
AH137	- 정신병원	50,000원	<종료>
AH054	- 요양병원	50,000원	<종료>

○ 산정방법 : 격리 입원료가 산정된 경우에만 적용

제목	변경 전 (~'23.5.31.)	변경 후 ('23.6.1.~)
적용 대상	코로나19 확진 환자로 코로나19 일반격리 병상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은 경우	좌동
적용 기간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동 지침에 의한 격리 해제시점까지(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른 의료기관 입원환자 격리 권고 기간까지 (단, 검체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
산정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 1일당의 의미는 입원료 산정 기준의 1일당으로 적용기간 내 격리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산정횟수에서 제외함 상기 1.에도 불구하고「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연속하여 6시간 이상 격리치료를 하고 응-1 응급의료관리료가 발생한 경우 1회 산정함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소아야간·공휴 등)은 적용하지 않음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ol style="list-style-type: none"> 격리 입원 1일당 1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원 1일당의 의미는 입원료 산정 기준의 1일당으로 적용기간 내 격리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함 단,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는 산정횟수에서 제외함 <삭제> 요양기관 종별가산 및 각종 가산(소아야간·공휴 등)은 적용하지 않음 코로나19 지정격리병상에서 격리 입원 치료한 경우에는 산정할 수 없음

○ 청구방법

- 20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변경된 단가로 산정

* 당월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변경된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CCYYMMDD”형식(8자리)으로 기재함

□ 적용일 : '23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별도 안내시까지

□ 기타

○ 동 안내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1553호(2023.3.29.)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에 따름

연번	질 의	답 변																								
1	<p>【대상기관】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정신병원, 요양병원에서 격리 입원한 경우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p>	<p>○ 정신병원, 요양병원은 '23.5.31. 진료분까지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고, '23.6.1. 진료분부터는 산정할 수 없음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은 별도 안내 시 까지 동 수가를 산정할 수 있음)</p>																								
2	<p>【단가 변경】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 변경 사항은?</p>	<p>○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은 단가를 50% 인하하여 '23.6.1. 진료분부터 변경단가로 산정함</p> <p>○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지정격리병상은 단가 변경사항 없으며, '23.6.1. 이후에도 동일단가로 산정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rowspan="2">종별</th> <th colspan="2">지정격리병상 (상시병상)</th> <th colspan="2">일반격리병상</th> </tr> <tr> <th>코드</th> <th>단가</th> <th>코드</th> <th>단가</th> </tr> </thead> <tbody> <tr> <td>상급종합병원</td> <td>AH096</td> <td>27만원</td> <td>AH172</td> <td>13.5만원</td> </tr> <tr> <td>종합병원</td> <td>AH097</td> <td>16만원</td> <td>AH174</td> <td>8만원</td> </tr> <tr> <td>병원</td> <td>AH098</td> <td>10만원</td> <td>AH176</td> <td>5만원</td> </tr> </tbody> </table> <p>* 상시병상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긴급치료병상 ** 한시지정 격리병상은 지정격리병상, 일반격리병상 수가 모두 산정할 수 없음(보험급여과-1553호 참조)</p>	종별	지정격리병상 (상시병상)		일반격리병상		코드	단가	코드	단가	상급종합병원	AH096	27만원	AH172	13.5만원	종합병원	AH097	16만원	AH174	8만원	병원	AH098	10만원	AH176	5만원
종별	지정격리병상 (상시병상)			일반격리병상																						
	코드	단가	코드	단가																						
상급종합병원	AH096	27만원	AH172	13.5만원																						
종합병원	AH097	16만원	AH174	8만원																						
병원	AH098	10만원	AH176	5만원																						
3	<p>【수가 산정방법】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응급실에서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또는 격리입원했으나 부득이하게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정액수가 산정 등)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는지?</p>	<p>○ '23.6.1.진료분부터 '가10 격리실 입원료', '가9-1 중환자실내 격리관리료' 등 격리 입원료가 산정된 경우에 한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있음</p> <p>※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조정에 따라 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따른 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외적 조치 사항 종료</p>																								
3-1	<p>응급실에서 5.31. 24시(6.1. 0시) 전후로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지?</p>	<p>○ 응급실에서 5.31. 24시(6.1. 0시) 전부터 6시간 이상 격리치료한 경우 수가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6.1. 0시 이후 격리가 시작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없음</p>																								

연번	질 의	답 변																																																																						
4	<p>【수가 청구방법】 당월 요양개시일 이후에 단가가 변경된 경우 수가 산정방법은? <예> 6.1. 전후로 격리입원하여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 격리병상 수가'를 산정한 경우</p>	<p>○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일반격리병상 단가 변경일(2023.6.1.)을 기준으로 줄번호를 달리하여 각각 청구함(명세서 분리청구 불필요) - '23.4.1.~5.31. 진료분은 기존 단가로 청구 - '23.6.1.이후 진료분은 변경 단가로 청구 * 줄번호를 달리하여 청구하여도 검체채취일자는 1회만 기재하여도 됨</p> <p>○ 6.1. 이전부터 입원한 경우 변경 단가의 명세서 진료내역의 “변경일”란에 변경 단가의 최초 실시일자를 기재함 ※ ‘변경일’란 기재형식: CCYYMMDD</p> <p>(예시) 5/29 검체채취, 5/29 격리시작하여, 6/4 24시 (6/5 0시)에 격리해제하여 6/5 퇴원한 경우</p> <table border="1" data-bbox="778 965 1426 1312"> <thead> <tr> <th colspan="10">명세서 진료내역</th> </tr> <tr> <th>줄번호</th> <th>항목</th> <th>코드구분</th> <th>코드</th> <th>단가</th> <th>일투</th> <th>총투</th> <th>금액</th> <th colspan="2">변경일</th> </tr> </thead> <tbody> <tr> <td>0003</td> <td>01 03</td> <td>1</td> <td>AH176</td> <td>100,000</td> <td>1</td> <td>3</td> <td>300,000</td> <td colspan="2"></td> </tr> <tr> <td>0004</td> <td>01 03</td> <td>1</td> <td>AH176</td> <td>50,000</td> <td>1</td> <td>4</td> <td>200,000</td> <td colspan="2">20230601</td> </tr> <tr> <th colspan="10">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th> </tr> <tr> <td colspan="2">발생단위 구분</td> <td colspan="2">줄번호</td> <td colspan="2">특정내역 구분</td> <td colspan="4">특정내역</td> </tr> <tr> <td colspan="2">2</td> <td colspan="2">0003</td> <td colspan="2">JX999</td> <td colspan="4">20230529</td> </tr> </tbody> </table>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항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003	01 03	1	AH176	100,000	1	3	300,000			0004	01 03	1	AH176	50,000	1	4	200,000	20230601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2		0003		JX999		20230529			
명세서 진료내역																																																																								
줄번호	항목	코드구분	코드	단가	일투	총투	금액	변경일																																																																
0003	01 03	1	AH176	100,000	1	3	300,000																																																																	
0004	01 03	1	AH176	50,000	1	4	200,000	20230601																																																																
명세서 특정내역기재란																																																																								
발생단위 구분		줄번호		특정내역 구분		특정내역																																																																		
2		0003		JX999		20230529																																																																		